

선	기관장
람	



제20호 2022. 5. 25.(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2-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2-179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2-18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2-182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
광양시 고시 제2022-183호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고시	11
광양시 고시 제2022-184호 광양시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승인 고시	14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075호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7
광양시 공고 제2022-1078호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7
광양시 공고 제2022-1083호 공시송달공고	38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옥곡천
점용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31번길 8-4. 1층
	성명	천지개발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911-1 외 7필지
	면적	63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시추장비 설치
점용기간		2022. 5. 17. ~ 2022. 6. 16.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2-179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2. 5. 25.(수)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성황도이로 (1차종속도로)	로	골약동	도이동 산20-3	도이동 산3-1	도면 참조	375	14	20	66-1	66-38	도시개발사업 지구명에서 인용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고시 제 2022 - 18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12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 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5.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5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50-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12	20220525	20090902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87-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2길 13-8	20220525	20090623	법정리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86-3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2길 10 (중동)	20220525	20090421	옛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70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명주1길 50	20220525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22	전라남도 광양시 회망길 54 (금호동)	20220525	20081001	제철의 발전적인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 작명

광양시 고시 제 2022-182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0	2022. 5. 25.	건물철거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전남 광양시 광양읍 향교길 49-2		
3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2길 1		
4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40-1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25.

광 양 시 장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대림오성로	10	광양읍 덕례리 1774-7	▶ 건물철거 (건축과-20045(2022. 5. 18.)호에 의거)	2022. 5. 18.	2022. 5. 25.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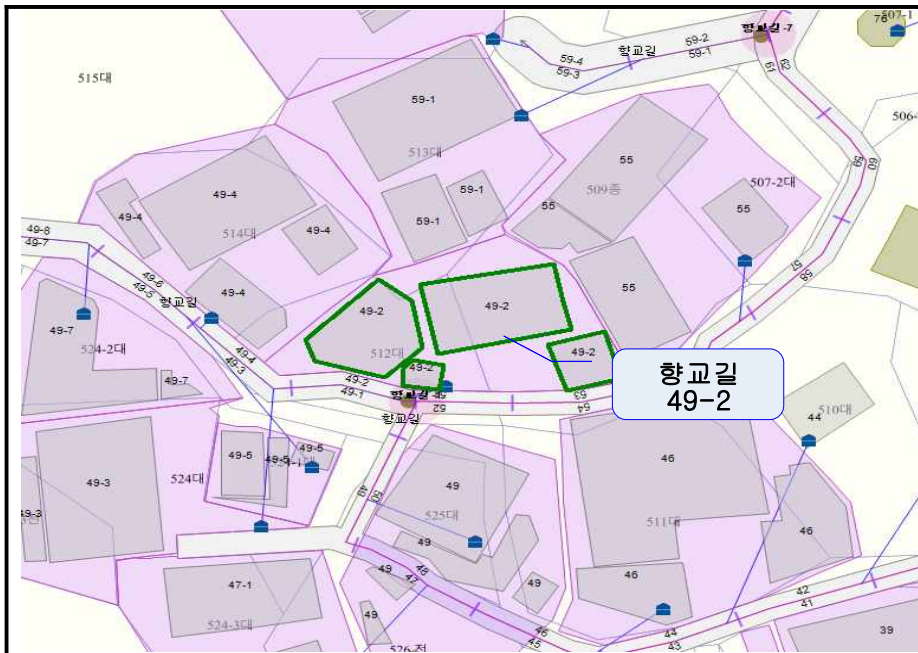
광양시 기본도시시스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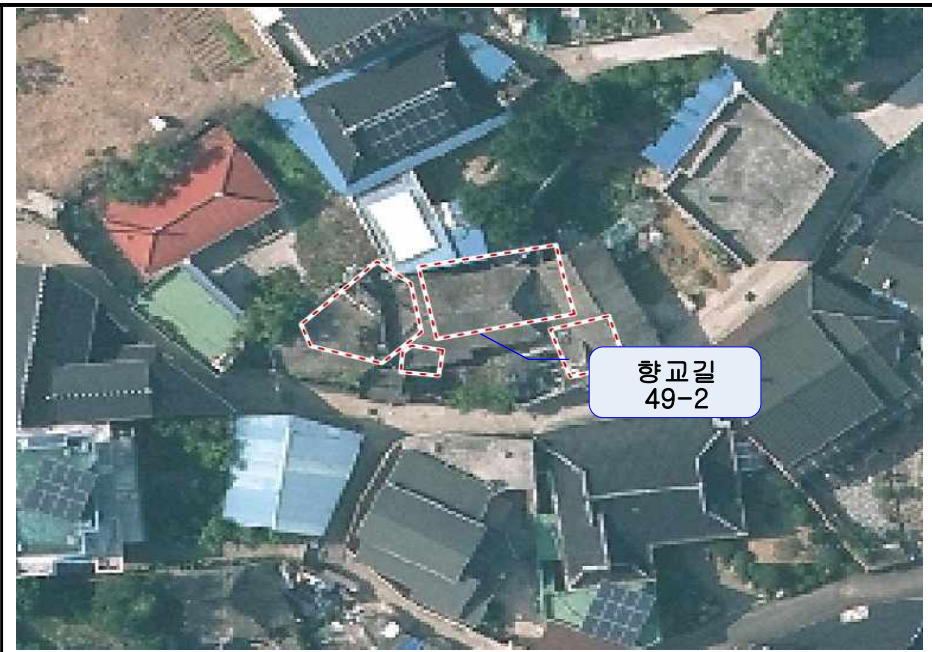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향교길	49-2	광양읍 우산리 512	▶ 건물철거 (건축과-20203(2022. 5. 18.)호에 의거)	2022. 5. 18.	2022. 5. 25.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목성2길	1	광양읍 목성리 958-5	▶ 건물철거 (건축과-19402(2022. 5. 16.)호에 의거)	2022. 5. 16.	2022. 5. 25.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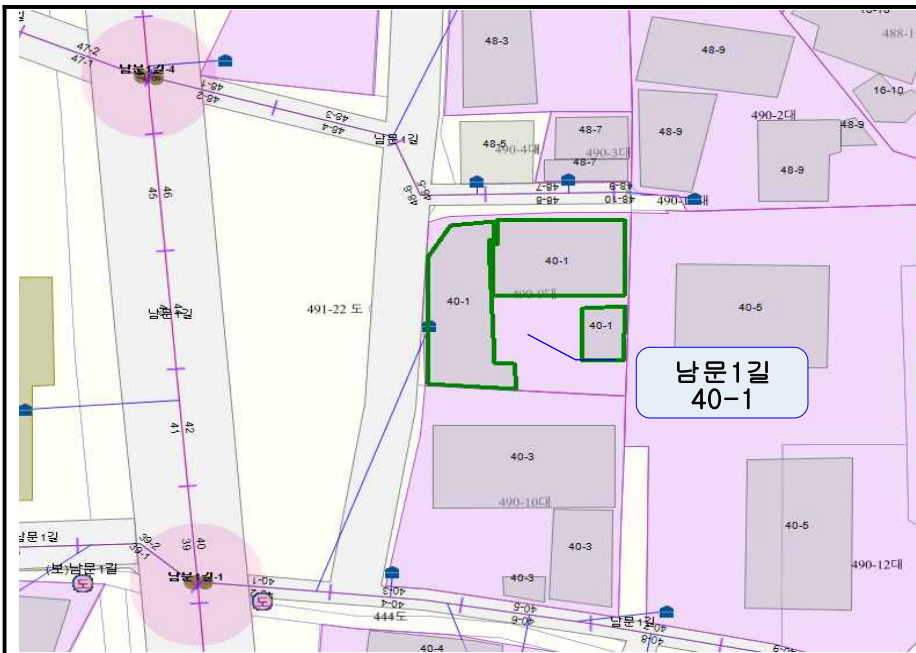
붙임

건물번호 직권 폐지 내역

건물번호 폐지 내역

도로명	건물번호	대표지번	폐 지 사 유	폐 지 일	고 시 일
남문1길	40-1	광양읍 칠성리 490-9	▶ 건물철거 (건축과-18392(2022. 5. 10.)호에 의거)	2022. 5. 10.	2022. 5. 25.

현황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광양시 기본도시스템

광양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 2022. 5. 25.
2.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붙임조서 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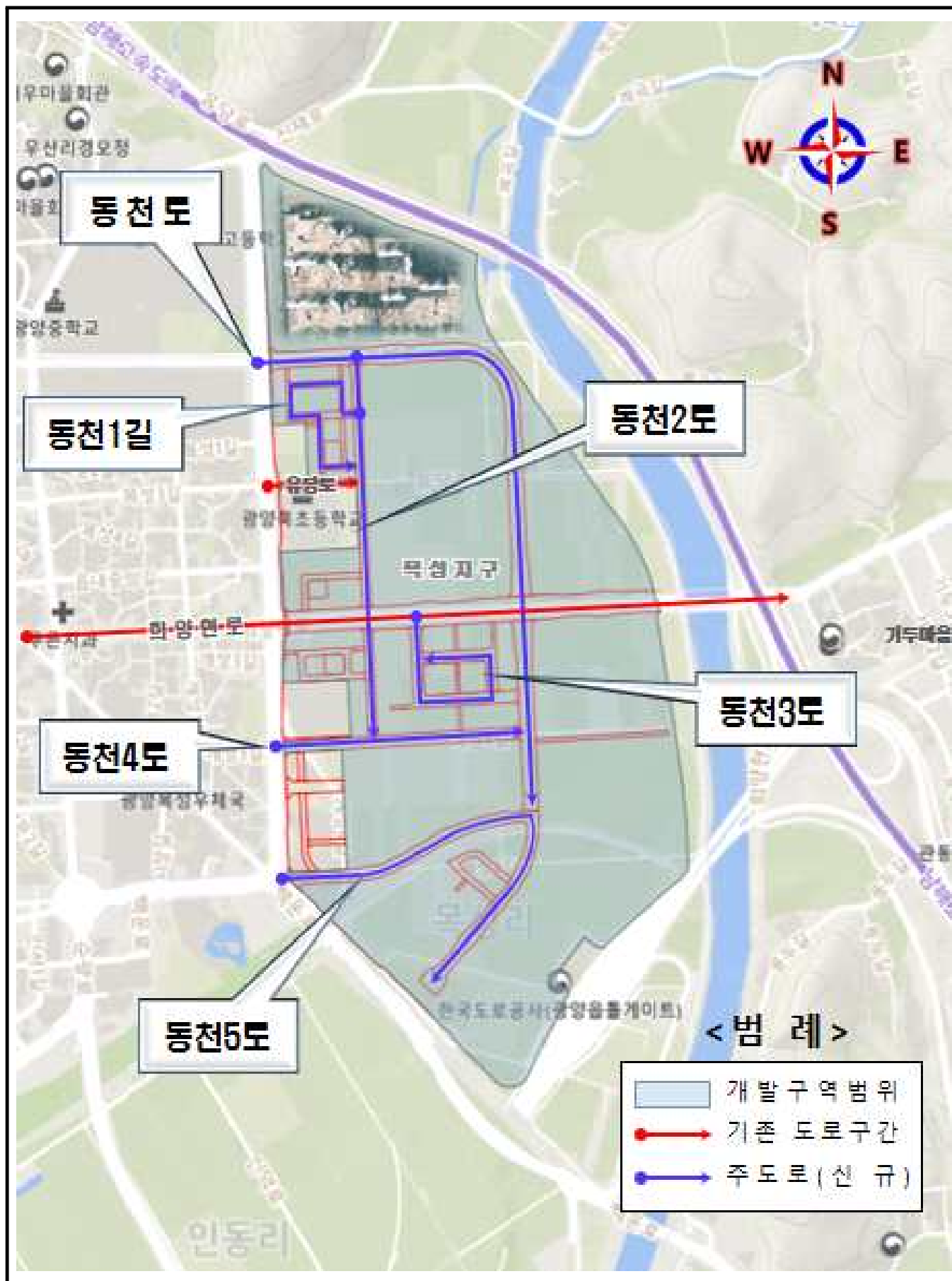
붙임 : 도로명 부여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명 부여 조서

12

연번	도 로 명	도로 구분	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m)	폭(m)		시작	끝		
1	동천로	로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488-1	광양읍 목성리 512-1	도면 참조	1154	26	20	1	114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2	동천1길	길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488-4	광양읍 목성리 492-6	도면 참조	417	8	20	1	42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3	동천2로	로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488-4	광양읍 목성리 525-24	도면 참조	634	19	20	1	62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4	동천3로	로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501-28	광양읍 목성리 501-2	도면 참조	443	19	20	1	44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5	동천4로	로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622-2	광양읍 목성리 525-48	도면 참조	436	19	20	1	42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6	동천5로	로	광양읍	광양읍 목성리 1028-2	광양읍 목성리 520-2	도면 참조	797	20	20	1	78	현 동천을 끼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로 이를 인용	

☐

광양시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승인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광양시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022. 5. 25.

광 양 시 장

□ 사업 필요성

- 물리적 쇠퇴가 진행중이며,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양극화 심화, 인구 쇠퇴, 거주 세대의 변화 등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며
- 단일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사업체 수가 적고 제조업에 국한된 지역으로 지역 산업의 불균형 초래
-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및 생활SOC 시설 부족,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요인 작용
- 지역 양극화 해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SOC 공급과 단일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단 연계 창업·창직 거점 조성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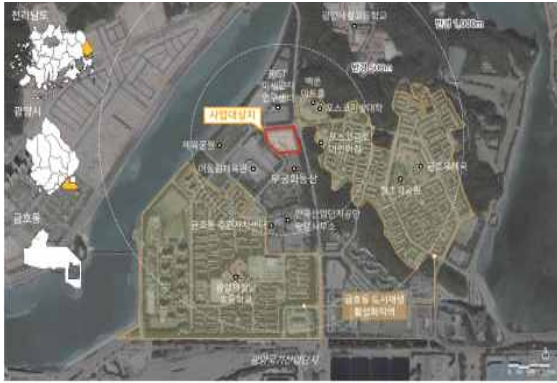
□ 사업 개요

- 사업 명: 금호동 금호다움 플랫폼 조성사업
- 위 치: 광양시 금호동 850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2년~2024년(3년간)
- 사업면적: 20,000㎡
- 사업비: 15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33.34억, 자체지방비66.66억)
- 시행자: 전라남도 광양시

○ 사업내용:

- 라이프업센터: 지상3층, 연면적 1,890㎡, 건축면적 1,200㎡
- 스타트업센터: 지상3층, 연면적 2,020㎡, 건축면적 1,200㎡
- 공유마당 및 쉼터: 연면적 3,315㎡

○ 위 치 도



□ 사업 계획

- 주민 삶의 제고를 위한 생활SOC 공급 및 국가산단 연계 창업·창직 거점조성
 - 인근 신도시지역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쇠퇴하고 급변하고 있는 지역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실현
 - 지역 맞춤형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민 공동체를 지원 및 활성화하고 주민의 역량강화 실현
 - 단일 사업장 의존지역에서 탈피하여 젊은 청년유입을 위한 창업 거점 시설을 구축 및 지역 내 주민커뮤니티와 여가를 지원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대 효과

- 라이프업센터
 - 공동체 참여기회 확대와 육성으로 자생력 확보 및 주민주도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금호살이 유지
 - 사회 공헌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산단기업과의 공존 및 공생
- 스타트업센터
 - 유망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지역사회공헌 등 금호동지역 정체성 강화
 - 지역 활성화로 하여금 미래 성장의 강력한 추진동력 제공
 - 청·장년층 취업 및 창업 등 제2커리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광양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제 정 목 적(안 제1조)
 -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양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 발굴
-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 5년마다 광양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먹거리 보장,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분야별 사항 등
- 먹거리 보장 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먹거리 종합계획 및 변경,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각종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21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4. 입법예고기간 : 2022. 5. 25. ~ 2022. 6. 14.(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 농산물마케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2청사 3층
농산물마케팅과 (우편번호: 57741)
- 전 화: 061-797-3792
- 팩 스: 061-797-4176(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yoyo215@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광양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양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이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광양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제10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好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영양교사, 교사,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내·외부 전문가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5.

광 양 시 장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21.9.24. 제정 '22.3.25.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녹색성장 활성화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 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책무 :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제4조)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목표설정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안 제6조)
- 기본계획수립 : 지역 특성 및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한 10년 계획기간의 계획수립(5년) 및 평가(매년) (안 제7조~제8조)

○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공공부문 지원 :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9조)
- 감축 시책 :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안 제10조 ~ 제14조)
- 통계작성 : 온실가스관련 정보 및 통계 매년 작성 (안 제15조)

○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협동조합 활성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협동조합에 지원 (안 제17조)
- 교육 홍보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안 제19조)
-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20조)
- 기후대응기금 :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설치 (안 제22조)

○ 부칙 :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 2022. 5. 25. ~ 6. 14.(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환경과장, 전화: 061-797-2335, FAX: 061-797-2585, E-mail: menwit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광양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양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9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1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

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³⁶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② 시장은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광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광양시 공고 제2022-10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광 양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
2. 공고기간 : 2022. 05. 25. ~ 2022. 06. 08. (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사망자)	생년월일	주소
1	09라2230	김*수	50.07.07.	광양시 담안*길 **-**

4.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 폐차의 경우 3개월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말소)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말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협의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사본 1부
 - ※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1부.
 - 다.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자 의무보험가입(책임보험)
- 상속자 본인 신분증
- ※ 문의사항 : 광양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061-797-3396, 3369)